

서울特別市永登浦區새마을所得特別
支援事業資金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
例案에 대한 諸案動議

1992. 10. 24.

裴基漢委員外1人

1. 주 문

1992년 9월 4일 제12회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폐회중) 개회한 제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 제안하기로 의결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부결할 것을 번안동의한다.

2. 제 안 이 유

현행 조례 제9조 용자금의 상환기한 연장시 구의회의 의결로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구의회의 의결을 삭제하고, 구청장은 구 지회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의결하였으나, 상환기한의 연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회의 결정을 받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서울特別市永登浦區새마을獎學金支
給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諸案動議

1992. 10. 24.

楊雲燮委員外1人

1. 주 문

1992년 10월 23일 제1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개회한 제4차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 제안하기로 의결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증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부결할 것을 번안동의한다.

2. 제 안 이 유

현행법상 새마을 조직은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이 제정되어 있고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이 제정되어 있어 업무집행의 일원화 및 간소화를 위해 두 조직을 통합하여 혜택을 주기로 하였으나 본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업무를 복잡화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됨.